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청원번호 : 제52호
2. 청 원 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212동 603호
이현지 외 1,441세대
3. 소개의원 : 이윤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 접수일자 : 2016. 11. 07.
5. 회부일자 : 2016. 11. 08

II. 청원요지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동소문동 6가 261-1에 추진하는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취소하고 동 부지에 돈암동 다목적 평생학습관 및 생태학습 체험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함.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의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621-2 소재에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당초 서울 삼선중학교 대토부지로서 교육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토지임.
따라서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와 돈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평생학습관이나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건립하여 인근지역의 초등학생, 청소년과 인근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청원임.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기 타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16년 11월 7일 이현지 외 1,441세대 성북구 주민에 의해 청원번호

제52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동소문동 6가 261-2에 추진 중인 행복(연합)기숙사의 건립을 취소하고 동 부지에 평생학습관 및 생태학습 체험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에 대한 검토

-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국·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여러 대학이 활용하는 연합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숙사 건립 부지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정책입니다.
- 이러한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대학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본 청원과 같이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인접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¹⁾
- 동 청원의 대상이 된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는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61-2의 토지는 국유지(지목: 대, 관리청: 교육부)로서²⁾ 지난 2016년 4월 21일 동 토지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동소문동행복연합기숙사(유)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이후 지난 8월 10일 제14차 성북구 건축위원회에서는 ‘공공성을 확보(방과 후 학생 수용 공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의결하여 9월 10일과 23일 동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고 현재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청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1) 청원의 주요내용

- 본 청원에서 동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향뉴스, 대학생 행복기숙사 어쩌다 ‘혐오시설’이 됐다...주민 반대 이유는?, 2016.11.7., 한국대학신문, 주거 부담 완화해 줄 행복기숙사 건립 좌초 위기, 2016.12.6., 참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기숙사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교육감 및 시장과 구청장은 ‘다목적 평생학습관 및 생태학습 체험장 건립’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는바,³⁾

현재 교육청은 45개의 평생학습관(설치:3, 직속기관 지정:17, 외부 지정:25)을, 서울시는 18개 자치구에서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⁴⁾

이러한 평생학습관을 동 사업부지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국유지를 임차, 매입, 교환 등의 방식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 사업으로 편입하여 추진해야 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의 경우 정부의 대학생 주거 안정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도 동 기숙사 건립 사업은 교육부의 사업인 점, 동 사업부지가 국유지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평생학습관 등의 건립을 검토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2137).

- 따라서 동 청원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원인, 성북구청 등이 사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청과 서울시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 하겠는바, 동 청원 사항은 교육부로 민원을 신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는 등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가기관을 상대로 동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I. 교육청 평생학습관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지정(설치)년도	재지정년도	소재지
1	설치	고덕평생학습관	1999		강동구 고덕로 295
2	설치	노원평생학습관	1999		노원구 동일로 204길13
3	설치	마포평생학습관	1999		마포구 홍익로 2길16
4	설치	영등포평생학습관	1999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10
5	지정(직속)	강남도서관	2009	2015	강남구 선릉로 116길45
6	지정(직속)	강동도서관	2009	2015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57
7	지정(직속)	강서도서관	2006	2015	강서구 등촌로 51나길29
8	지정(직속)	개포도서관	2006	2015	강남구 선릉로 4길30
9	지정(직속)	고척도서관	2008	2014	구로구 고척로 45길31
10	지정(직속)	구로도서관	2009	2015	구로구 공원로 15
11	지정(직속)	남산도서관	2007	2016	용산구 소월로 109
12	지정(직속)	도봉도서관	2008	2014	도봉구 삼양로 556
13	지정(직속)	동대문도서관	2007	2016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22
14	지정(직속)	동작도서관	2008	2014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15	지정(직속)	서대문도서관	2008	2014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16	지정(직속)	송파도서관	2006	2015	송파구 동남로 263
17	지정(직속)	양천도서관	2007	2016	양천구 목동서로 113
18	지정(직속)	어린이도서관	2009	2015	종로구 사직로 9길7
19	지정(직속)	용산도서관	2009	2015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20	지정(직속)	정독도서관	2009	2015	종로구 북촌로 5길48
21	지정(직속)	종로도서관	2007	2016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22	지정(외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2007	2016	강북구 삼양로 92길 40
23	지정(외부)	강북청소년수련관	2016		강북구 4.19로 74길
24	지정(외부)	강서청소년회관	2010	2016	강서구 공항대로 42길 23-19
25	지정(외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06	2015	광진구 군자로 88
26	지정(외부)	광진청소년수련관	2012	2015	광진구 광장동 313-3

연번	구 분	시 설 명	지정(설치)년 도	재지정년도	소재지
27	지정(외부)	남부여성발전센터	2007	2016	금천구 독산로50길 23
28	지정(외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10	2016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29	지정(외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10	2016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30	지정(외부)	마포청소년수련관	2010	2016	마포구월드컵로212
31	지정(외부)	목동청소년수련관	2016		양천구 목동서로 143
32	지정(외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011	2014	노원구 동일로245길 56
33	지정(외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2016		동작구 상도로 39가길 7
34	지정(외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2012	2015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헤우빌딩4층
35	지정(외부)	서초구립여성회관	2010	2016	서초구 방배로 40
36	지정(외부)	성동구민대학	2008	2014	성동구 왕십리로 281
37	지정(외부)	성동청소년수련관	2016		성동구 고산자로 260
38	지정(외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2012	2015	중랑구 봉화산로 153
39	지정(외부)	아리랑정보도서관	2008	2014	성북구 아리랑로 12길4
40	지정(외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010	2016	중구 다산로6길 11
41	지정(외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08	2014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
42	지정(외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2011	2014	영등포구 도림로 482
43	지정(외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2006	2015	은평구 연서로 415
44	지정(외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2007	2016	중랑구 검재로 9길 45
45	지정(외부)	창동청소년수련관	2010	2016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Ⅱ. 자치구 평생학습관 현황

지역(18)	기관명(22)	운영형태	비고
용산구	용산구평생학습관	구직영	
중랑구	중랑평생학습관	구직영	
성북구	성북구평생학습관	구직영	
도봉구	도봉구평생학습관	구직영	
노원구	노원평생교육원	구직영	
은평구	은평구평생학습관	위탁운영	
서대문구	서대문구평생학습관	구직영	
마포구	마포구평생학습센터	구직영	
양천구	양천구평생학습센터	구직영	
강서구	강서평생학습관	구직영	
동작구	동작구평생학습관	구직영	
구로구	구로평생학습관(2) (개봉동, 구로동)	구직영	
금천구	금천평생학습관	구직영	
영등포	영등포구평생학습관(2) (문래동, 당산동)	구직영	
관악구	관악구평생학습관	구직영	
강남구	평생학습관(3) (압구정, 청담, 대치)	위탁운영	
송파구	송파구평생학습센터	구직영	
강동구	강동구평생학습센터	구직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0.1.7.] [서울특별시규칙 제17호, 2010.1.7., 일부개정]

-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